

회화면단위하수처리장 신설 고성군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제881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11. 5 고성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4. 11. 6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4. 11. 11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 찬성의견

2. 제안사유

- 회화면 배둔리 도시계획구역 및 인근 매립지의 경우 도시의 발전과 인구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하수발생량은 증가되고 있으나, 하수관거시설이 미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 생활하수 등이 미처리 상태로 연안해역인 당항만으로 유입되어 연근해의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며, 적보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지역의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는 하수를 정화 처리하여 방류시킴으로서 연안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건전한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여 도시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회화면단위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주요골자

- 회화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 2,927m²
 - 목 표 연 도 : 2006(최종목표년도 : 2021년)
 - 처리구역면적 : 55.49ha(최종목표구역 : 66.97ha)
 - 계획처리인구 : 3,500인(최종목표인구 : 4,000인)

- 시 설 규 모 : 1,000m³/일
- 수처리 계통 : SMMIAR 공법
- 슬러지 처리 : 농축·탈수 → 최종처분(슬러지 퇴비화)
- 방 유 수 역 : 배둔천(지방2급하천) → 당항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성군유지로 등록된 매립장 부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승인, 하수도 정비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고성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환경부 설계자문과 낙동강 유역 환경청의 검토 협의를 거쳐 고성군관리계획(하수도)을 결정하여 열람공고 하였습니다.
- 회화면 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은 2006년도까지 완공하여 회화면 도시계획 구역 일부와 마암면 원진마을, 배둔매립지 일부를 대상으로 생활하수를 정화처리하고 최종 목표연도인 2021년까지는 회화면 도시계획 구역 마암면 원진마을, 배둔 매립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하수를 정화처리 함으로서 당항만에 유입되는 수질을 개선하여 연근해의 오염을 방지하고 건전한 도시발전과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시행이 타당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5. 질의 및 답변

- 문 : 회화면 배둔이 금후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하여는?
- 답 : 현재 인구에 대비 인구증가를 예상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4. 11. 11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가결